

의안번호	2202619
의 퇴 인	박성준의원
회 답 일	2024. 08. 26.
추 계 번호	24D26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49억원, 2027년 2,496억원 등 향후 5년간 2,745억원(연평균 549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억원)

구분	2025	2026 (지선)	2027 (대선)	2028 (국선)	2029	합계	연평균
대통령 결선투표 실시 (안 제187조의2 신설 등)	—	—	2,496	—	—	2,496	499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 실시 (안 제191조의2 신설 등)	—	249	—	—	—	249	50
합계	—	249	2,496	—	—	2,745	549

주: 1. 대통령 결선투표 실시(안 제187조의2 신설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 실시(안 제191조의2 신설)는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2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득표결과, 선거관리비용 집행액 등을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87조의2(대통령 당선인 결정의 특례) 신설 등	대통령선거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 －결선투표는 선거일 후 7일째 되는 날 －결선투표 선거운동기간은 결선투표확정일(개표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것이 확인된 날)부터 결선투표전일까지 －선거벽보: 결선투표확정일 후 3일 이내 제출 －선거공보: 8면 이내 작성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연설: 결선투표운동기간 중 각 1회 이내 －대담·토론회: 1회 이상 －재외투표소 설치·운영	의무규정
2	안 제191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 결정의 특례) 신설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때에는 결선투표를 실시 －결선투표는 선거일 후 7일째 되는 날 －결선투표 선거운동기간은 결선투표확정일(개표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것이 확인된 날)부터 결선투표전일까지 －선거벽보: 결선투표확정일 후 3일 이내 제출 －선거공보: 6면 이내 작성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연설: 시도지사 결선투표 운동기간 중 각 1회 이내, 자치구·시·군의 장 결선투표 운동기간 중 각 1회 이내 －대담·토론회: 1회 이상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87조의2(대통령당선인 결정의 특례) 신설 등	○	
2	안 제191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 결정의 특례) 신설 등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른 결선투표 선거운동 기간은 6일로 가정하고 2022년 대통령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득표결과, 선거관리비용 집행액 등을 근거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개정안에서 결선투표는 선거일 후 7일째 되는 날이고, 결선투표 선거운동 기간은 결선투표확정일(개표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것이 확인된 날)부터 결선투표전일까지로 규정
 - 선거일 다음 날에 투표결과가 발표되어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것이 확인되므로 본 선거일 다음 날부터 결선투표일 전일(선거일 후 7일째 되는 날)까지는 총 6일로 추정됨
- 2022년 대통령선거¹⁾와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 결과를 참고하여,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선거, 29개의 지방자치단체장(기초)²⁾ 선거구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1) 2022년 대통령선거의 당선인 득표율은 48.56%

2) 시·도지사의 경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당선인 모두가 50% 이상의 득표하였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를 제외하고 모두 50% 이상을 득표한 점을 고려하여 본 추계에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선투표를 실시할 확률이 낮을 것으로 보아 추계에서 제외하기로 함

[표 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 결과: 2022년

(단위: 개, 명)

구분	선거구 수	선거인수
과반수 미만 득표	29	3,063,036
과반수 득표 등	191	39,380,781

주: 기초,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득표 결과이고 무투표선거구 지방자치단체장 6개 제외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2026년, 2027년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보궐 선거는 추계에서 제외하기로 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³⁾
- 개정안 부칙에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이 도래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와 2027년 대통령선거의 결선투표제 도입에 따른 선거관리비용과 선거비용 보전액

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 실시(안 제187조의2 신설 등)

- (선거관리비용)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의 득표수가 과반에 미달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관리비용 부문의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269억원으로 예상

3)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4.7 기준)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CPI)	5.1%	3.6%	2.6%	2.2%	2.2%	2.1%	2.1%	2.1%	2.0%

- 선거관리비용은 투·개표관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운영, 선거관리일반, 계도·홍보 및 단속에 한하여 발생
- 투·개표 관리비용의 경우, 직전 대통령선거(2022년) 기준 1,934억원에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직전 대통령선거(2022년) 기준 8억원에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한 후, 총 토론회 개최 횟수(7회, 2022년 대통령선거 기준) 등으로 나누어 1회당 비용 산출
- 선거관리일반, 계도·홍보 및 단속비용의 경우, 직전 대통령선거(2022년) 기준 917억원에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한 후, 현행 선거관리 기간 82일⁴⁾ 대비 대통령선거 결선투표 선거운동기간(6일) 비율($7.3\% = 6일 \div 82일$)을 곱하여 산출

[표 3] 대통령선거 결선투표 시 선거관리비용 부문의 추가재정소요 추정: 2027년

(단위: 억원)

구분		집행액 (2022년)	집행액 추정	산출과정	추가재정소요
			2027		2027
투·개표 관리	사전투표	706	—	2,192억원×100%	2,192
	투·개표관리	1,228			
	소계	1,934	2,19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운영 등		8	9	9억원÷7회	1
선거관리일반, 계도·홍보 및 단속	선거관리일반	181	—	1,039억원×7.3%	76
	선거운동관리	413			
	계도·홍보	98			
	위법행위단속	225			
	소계	917	1,039		
합계					2,269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선거비용보전액)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의 득표수가 과반에 미달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비용 보전액 부문의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26억 6,200만원으로 예상

- 선거비용 보전액의 경우, 일반적으로 100% 보전을 받지 못하나 결선투표 실시로 100% 보전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여 2022년 대통령선거의 평균

4) 현행 선거관리 경비의 배정 시기는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이고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2일이므로 82일 동안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

선거비용제한액과 평균 보전액의 차액 만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2022년 대통령선거 시 당선인의 득표수는 과반에 미달하였고, 개정안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액 부문의 추가재정소요는 2022년 기준 평균 99억 9,600만원(=513억 900만원 - 413억 1,300만원)

[표 4]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액 현황: 2022년

(단위: 개, 백만원)

	보전대상 정당수	제한액	평균 보전액
대통령선거	2	51,309	41,313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추계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상승하면 2027년 기준 평균 113억 3,100만원으로 추정
- 2027년 대통령선거 시 결선투표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액 부문의 추가재정소요는 226억 6,200만원(=113억 3,100만원×2개 정당)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 실시(안 제191조의2 신설 등)

□ (선거관리비용)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관리 관련 추가개정소요는 2026년 214억원, 2030년 232억원으로 추계

- 선거관리비용은 투·개표관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운영, 선거관리일반, 제도·홍보 및 단속에 한하여 발생
- 2022년의 선거관리비용 집행액을 바탕으로 추계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국회예산정책처 전망값)에 상승하고, 결선투표 선거운동 기간, 선거구 수 등을 고려한 비율 등을 적용하여 추정
- 투·개표 관리비용의 경우, 직전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기준 2,453억 원에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한 후, 결선투표 실시가 필요한 선거구의 선거인 수 비율($7.2\% = 3,063,036\text{명} \div 42,443,817\text{명}$) 적용하여 산출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운영비용의 경우, 직전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기준 51억원에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한 후, 총 토론회 개최 횟수(356회,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로 나누고 결선투표 실시가 필요한 선거구 수(29개)를 곱하여 산출

- 선거관리일반, 계도·홍보 및 단속비용의 경우, 직전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기준 2,207억원에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한 후, 현행 선거관리 기간 73일 대비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 선거운동기간(6일) 비율($8.2\% = 6\text{일} \div 73\text{일}$)과 결선투표 실시가 필요한 선거구의 선거인 수 비율(7.2%)을 곱하여 산출

[표 5]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 시 선거관리비용 부문의 추가재정소요 추정: 2026년
(단위: 억원)

구분		집행액 (2022년)	집행액 추정 2026	산출과정 예시 (2026년)	추가재정소요 2026
투·개표 관리	사전투표	699	-	2,723억원 $\times 7.2\%$	196
	투·개표관리	1,754			
	소계	2,453	2,72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운영		51	57	57억원 $\div 356\text{회} \times 29\text{개}$	5
선거관리일반, 계도·홍보 및 단속	선거관리일반	625	-	2,250억원 $\times 8.2\% \times 7.2\%$	13
	선거운동관리	619			
	계도·홍보	127			
	위법행위단속	656			
	소계	2,027	2,250		
합계					214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선거비용보전액)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비용보전 관련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5억원, 2030년 38억원으로 추계
- 선거비용 보전액의 경우, 일반적으로 100% 보전을 받지 못하나 결선투표 실시로 100% 보전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여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과 평균 보전액의 차액 만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액 부문의 추가재정소요는 2022년 기준 1인당 5,400만원($= 1\text{억 } 8,100\text{만원} - 1\text{억 } 2,700\text{만원}$)

[표 6]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액 현황: 2022년
(단위: 명, 백만원)

	보전대상 후보자수	1인당 평균 제한액(a)	1인당 평균 보전액(b)	차액 (=a-b)
자치구·시·군의 장	477	181	127	54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추계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상승하고 선거구 수와 평균 후보자 수 2명을 곱하여 추가재정소요 산출

[표 7]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 시 선거보전비용 부문의 추가재정소요 추정: 2026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지선)	2027 (대선)	2028 (국선)	2029
1인당 보전액(a)	-	61	-	-	-
결선투표 선거비용 보전액 (=a×29개×2명)	-	3,538	-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추계결과

- 추계결과,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49억원, 2027년 2,496억원 등 향후 5년간 2,74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표 8]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억원)

구분		2025	2026 (지선)	2027 (대선)	2028 (국선)	2029	합 계
대통령 결선투표	선거관리비용	-	-	2,269	-	-	2,269
	선거비용보전액	-	-	227	-	-	227
	소계	-	-	2,496	-	-	2,496
지방자치단 체장 결선투표	선거관리비용	-	214	-	-	-	214
	선거비용보전액	-	35	-	-	-	35
	소계	-	249	-	-	-	249
합계		-	249	2,496	-	-	2,745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2022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득표결과, 선거관리비용 집행액 등을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